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07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정진욱 ·오세희 · 박해철

윤건영 • 이개호 • 조인철

이언주 • 양부남 • 민형배

이건태 · 정준호 · 백승아

염태영 · 허성무 · 강준현

박홍배 • 이기헌 • 임광현

김 윤 • 이병진 • 김문수

김영배·송재봉·김 현

의원(24인)

제안이유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위해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

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또한,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반도체산업혁신특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마.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
- 사.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안 제13조).
- 아.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관리주체와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정비가 필요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 도록 함(안 제14조).
- 자.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차.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 반도체산업혁신특구로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 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 및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다.
 -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계·제조·공급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
 - 나. 가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소재· 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 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 2. "반도체산업혁신특구"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 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

도록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3.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이란 반도체 특구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고 반도체 특구에서 배출하는 폐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등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 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 2.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5.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 발 투자의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8.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 9.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10.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국가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8조에 따른 국가반도체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 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 4. 제10조 및 제11조 따른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조성·지정·해제 ·지원 및 특구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제12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 분야 발전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조율에 관한 사항

- 8. 반도체산업단지혁신특구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 9. 반도체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 회 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 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 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3.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 4. 해외 인력의 유치 지원
- 5.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 6.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 7.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반도체기술 확보 및 제조 능력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제품 생산 및 정밀 검사
- 2.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 장비 도입
- 3.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설비
- 4.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반도체 산업혁신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 2.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정하는 지역
-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구 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 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 2.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3.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개발 및 발전 계획
- 4.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개발 및 발전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5.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 에너지"라 한다)의 공급 확대와 설비 확충 방안
- 6. 그 밖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라 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1. 반도체산업혁신특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권자
- 2. 반도체산업혁신특구가 산업단지 외 지역에 지정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도지사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원활한 인프라 조

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 산업혁신특구계획 및 반도체산업혁신특구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지정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변경 또는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 3.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반도체산업혁신특구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설비투자
 -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9.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산

업혁신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에 따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용수공급시설
- 2. 전기공급시설
-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 4.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5. 공원 및 공동구 건설비
- 6. 그 밖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 및 반도체산업혁 신특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대부료 및 감면율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반도체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 요비용
- 2.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략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 3.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반도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반도체산업 등의 영위를 위한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토지 등 취득 비용
- 제13조(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구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 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 5. 그 밖에 반도체산업혁신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 허가권자가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 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⑥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관리주체와 반도 체산업혁신특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은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

- 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 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 1. 제12조에 따른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원 사업
 - 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반도체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반도체 관련 정보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②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

수금

-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7.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8. 차입금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③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 2.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 5.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 6.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설치·운영
- 7.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8.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9.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10.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반도체산업혁신특구 내 설립 및 반도체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 특구로 이전
 - 2.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 3.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
 - 4.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사업
 - 5.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업
 - 6.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 제19조(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7. 제18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이전된 대학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수도권 이외의 특성화대학등은 적합한 교육환경(시설 및 교원등)이 확충되면, 해당 과정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 국인투자 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하

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 2. 입주국내복귀기업
- 3.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제품에 투자하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
- 4.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입주기업체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